

# 특별공급 청약 안내문 [공통]



원주 | 동문 디 이 스트  
초 혁 신 도 시

※ 본 안내문은 2023.05.10. 기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등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 
※ 모든 청약자격 및 요건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.

구분	내용	
세대당 1회 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 가능</li> <li>• 당첨자로 선정 시 향후 특별공급 신청 불가(본인이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각각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)</li> </ul>	
자격 요건	공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,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</li> </ul>
	무주택 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소형·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</li> <li>※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(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)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,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(부부 포함)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[계약체결 불가,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'수도권 및 투기·청약과열지역 1년, 수도권외 6개월, 위촉지역 3개월'(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) 동안 다른 분양주택(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급임대주택 포함)의 당첨 제한]</li> <li>※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다음 각 목의 사람(세대원)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)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주택공급신청자</li> <li>나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</li> <li>다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</li> <li>라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. 이하 같음)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</li> <li>마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
예비입주자	유형별 특별공급 배정 세대수의 500%	
장기 해외체류 시 국내거주 인정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(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)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. 단, 90일 이내의 여행, 출장,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례1)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: 해당지역 우선공급 청약가능.</li> <li>- 사례2)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: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,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음.</li> </ul> </li> <li>※ 단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.</li> </ul>	
기타 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.</li> <li>※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</li> <li>※ 소형·저가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.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)</li> </ul>	

## ■ 유형별 기본 자격

구분	전용면적 85㎡ 이하	전용면적 102㎡ 이하	전용면적 135㎡ 이하
원주시(강원도)	200만원	300만원	400만원

※ “지역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한다.

※ 본 안내문은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재유류·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.  
※ 청약자격 미숙지,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